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9
----------	----

2022. 9. 28.(수)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유재목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2년 8월 30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8월 31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9월 19일

-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재목 의원)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위원 대상기관의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약칭을 변경하는 등 기타 조문의 미비한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관 직제 변경(안 제3조)
 -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 “충청북도경찰청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및 제8조)
- 수당 지급 근거 조례 제명 수정(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개정안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의 명칭을 바로잡았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개정안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기존 “충북 지방경찰청 차장”의 명칭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으로 인하여 “충청북도경찰청 차장”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동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바로잡았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1조 중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로 정비함.
 -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정비함.
 - 제3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같은 항 제3호를 “3. 충청북도경찰청장”으로 반영함.
 -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정비함.
 - 제10조 중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반영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본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에 해당하여 조례안 예고 생략.
- 관련 부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하여 위원회 당연직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의 명칭을 바로

잡았으며, 그 밖에“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여 그 뜻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 론 요 지 : 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재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
----------	----

발의연월일 : 2022년 8월 30일

발의자 : 유재목, 이동우, 김종필,
김호경, 박지현, 박진희,
유재목

1. 제안이유

- 위원회 위원 대상 기관의 직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약칭을 변경하는 등 기타 조문의 미비한 점을 수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관 직제 변경(안 제3조)
 -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 “충청북도경찰청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및 제8조)
- 수당 지급 근거 조례 제명 수정(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협의 : 충청북도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 조례안 예고 : 생략(「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를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 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충청북도경찰청장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범위안” 을 “범위” 로 한다.

제10조 중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를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 5. (생략)</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2. (생략)</p> <p>3.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p> <p>4. ~ 8. (생략)</p> <p>②·③ (생략)</p> <p>제8조(조사·연구)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p>	<p>제1조(목적) ----- ----- 충 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 ----- ----- -----.</p> <p>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 ----- 충 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충청북도경찰청장</p> <p>4. ~ 8.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조사·연구)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 -----</p>

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 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범위-----
-----.

제10조(수당)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

관계법령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명칭 등) 시·도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으며, 그 관할 구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시·도경찰청의 명칭 및 위치(제38조 관련)

명칭	위치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경찰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경찰청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경찰청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경찰청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남부경찰청	경기도
경기도북부경찰청	경기도
강원도경찰청	강원도
충청북도경찰청	충청북도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
전라북도경찰청	전라북도
전라남도경찰청	전라남도
경상북도경찰청	경상북도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

비고: 관서의 현판·각종 표지판 등의 표기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서울경찰청"으로, "부산광역시경찰청"은 "부산경찰청"으로, "대구광역시경찰청"은 "대구경찰청"으로, "인천광역시경찰청"은 "인천경찰청"으로, "광주광역시경찰청"은 "광주경찰청"으로, "대전광역시경찰청"은 "대전경찰청"으로, "울산광역시경찰청"은 "울산경찰청"으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은 "세종경찰청"으로, "경기도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경기도북부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으로, "강원도경찰청"은 "강원경찰청"으로, "충청북도경찰청"은 "충북경찰청"으로, "충청남도경찰청"은 "충남경찰청"으로, "전라북도경찰청"은 "전북경찰청"으로, "전라남도경찰청"은 "전남경찰청"으로, "경상북도경찰청"은 "경북경찰청"으로, "경상남도경찰청"은 "경남경찰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제주경찰청"으로 표기할 수 있다.